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- 33호

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
2024. 8. 26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종규 의원 대표발의)

1. 제 안 이 유

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를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들의 관광활동에 있어 불편함을 개선하고, 관광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 고 자 료

가. 관련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,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심사예고 : 2024. . . ~ 2024. . .(일간)

라. 기 타

1) 조례제정안

2)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무장애 관광”이란 관광지,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·이용·이동 등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.
2. “관광약자”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.
3. 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임실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무장애 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

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)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
2.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
3.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
4.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
5.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
6.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
7.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재정 지원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「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『관광진흥법』

제47조의3(장애인·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·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·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·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1.>

제47조의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『관광진흥법 시행령』

제41조의3(관광취약계층의 범위)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 - 다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 - 라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4. 그 밖에 경제적·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